

수신 : 논산시의회 의장

2020. 3. 24.

제목 : 「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」 발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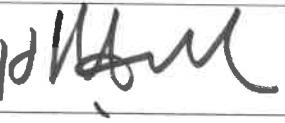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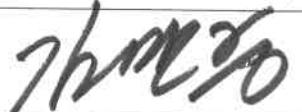
위 건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 및 「논산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「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을 붙임과 같이 발의 합니다.

붙임 : 발의 의원 서명날인 명단 및 조례안 1부. 마침.

발의자 : 김남충 의원 외 11인

-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-

발의 의원 서명부

성명	서명 · 날인	비고
김진호		
박승용		
조배식	조 배식	
김만중		
구본선		
이계천		
박영자	박영자	
서원		
조용훈		
김남충	김남충	
최정숙	최정숙	
차경선	차경선	



의안번호

제37호

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김남충 의원 외 11명
발의연월일	2020. 3. 24.

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의안
번호 제37호

발의연월일 : 2020. 3. 26.
대표발의자 : 김남충
공동발의자 : 김진호 박승용
조배식 김만중
구본선 이계천
박영자 서원
조용훈 최정숙
차경선

1. 제안이유

○ 논산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근로자가 행복한 삶의 권리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특히 코로나 19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적용대상 및 책무 (안 제3조~제4조)
- 다. 노동정책 기본계획, 연도별 시행계획, 점검 및 평가(안 제5조~제7조)
- 라. 노동권익보호센터 설치 · 운영 및 노동법령의 교육(안 제8조~제9조)
- 마. 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
 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-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불임 1부 (비용추계서)

다. 기타사항 : 조례안 참조

- 입법예고 : 2020. 3. . ~ 2020. 3. .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37호

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논산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근로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논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근로자로 한다.

제4조(책무) ①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③ 시장 및 시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 법령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노동정책 기본계획)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노동정책 기본 방향
2.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
3.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

4. 노동 관련 조사·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
 5.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
-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,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점검 및 평가)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노동권익보호센터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 노동권익보호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근로자의 실태조사
2.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
3.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
4. 근로자 권리구제 활동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3항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.

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과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노동법령의 교육)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

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교재,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
2.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
3. 각종 교육 기관, 시설,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·휴직·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,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김남충 의원 외 11명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10조(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)

2. 비용추계결과**가. 추계의 전제**

- 제10조(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·휴직·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나. 추계결과

- 긴급지원금 : 1,000,000원 × 1,700명 × 1회 = 1,700,000천 원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